

<별지 제5호 서식> <신설 2016.7.27>

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신고서

문서번호

20 . . .

수 신

참 조

제 목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관련 신고서 제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의3
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신고
합니다.

붙 임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 1부. 끝.

○ ○ ○ ○ 대표이사 (인)

(붙임)

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

1. 거래금액 기준 초과 내역

(단위: 원)

	전전기	전기	당기
연도 및 분기 ¹⁾	(예시) 2016년 4분기	(예시) 2017년 1분기	(예시) 2017년 2분기
거래금액 ²⁾	(예시) 2,000,000,000	(예시) 4,000,000,000	(예시) 5,000,000,000

[작성요령]

1) 연도 및 분기

- 당기 : 분기 거래총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두번째 분기
- 전기 : 분기 거래총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한 최초 분기
- 전전기 : '전기'의 전분기

2) 거래금액

- 전자지급결제대행 : 결제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, 기타(상품권 등) 포함) 이용자가 지불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말하며, 분기중 누적금액으로 작성
- 결제대금예치 :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제공업자와 거래한 총액으로서, 분기중 누적금액으로 작성
- 전자고지결제 : 이용자가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와 거래한 총액으로서, 분기중 누적금액으로 작성

2. 자본금 증액 계획

(단위: 원)

	등록시 자본금 ¹⁾	변경 후 자본금 ²⁾	자본금 변경 신고 예정일 ²⁾
자본금	(예시) 300,000,000	(예시) 1,000,000,000	(예시) 2017.12.31.

[작성요령]

1)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: 3억원 이상

결제대금예치업 : 3억원 이상

전자고지결제업 : 3억원 이상

2)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: 10억원 이상

결제대금예치업 : 10억원 이상

전자고지결제업 : 5억원 이상

2) 자본금 변경 신고 예정일 : 거래금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한 시점부터 6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